

[별표]

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(제2조 관련)

인증 대상 물류기업	인증기준
1. 화물자동차 운송기업	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일 것 나.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를 화주에게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갖추는 것 다.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체계 등을 갖추는 것 라.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영상태를 유지할 것 마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2. 물류창고기 업	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나.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추는 것 다. 창고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을 갖추는 것 라. 국내외 화물의 보관 실적 및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할 것 마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3. 국제물류주 선기업	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.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나. 총매출액 중 제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다. 자기 명의로 발행하는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 운송장이 연간 3천 건 이상일 것 라. 거래하는 수출 또는 수입 화물이 도착하는 국가가 연간 5개국 이상일 것 마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4. 화물정보망 기업	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. 화물운송 거래정보 관리체계가 우수할 것

	나. 화물정보망 운영의 안정성 및 보안관리가 양호할 것 다. 화물정보망의 이용 및 거래 실적이 적정할 것 라. 화물운송거래의 투명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적이 양호할 것 마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5. 종합물류서비스기업	다음 각 목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인증을 모두 받거나, 제1호, 제2호 및 제4호의 인증을 모두 받은 자일 것 나.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1) 영 별표 1에 따른 대분류(종합물류서비스업은 제외한다)별 세분류에 해당하는 물류사업을 각각 1개 이상씩 영위할 것 2) 영위하는 1개 물류사업의 매출액이 각각 전체 물류사업 총매출액의 3퍼센트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일 것 3) 전체 물류사업 총매출액 중 제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4)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
비고

제5호나목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물류기업은 해당 물류기업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인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